

신탁계약서 변경비교표

□ 펀드명 : 트러스톤 밸류웨이 소득공제 증권투자신탁[주식]

변경 사유	변경 전	변경 후
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 항 반영	제47조(공시 및 보고서 등)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(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한다)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. 1. (생략) 2.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. ~ 10. (생략) ② ~ ⑩ (생략)	제47조(공시 및 보고서 등)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(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한다)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. 1. (현행과 같음) 2.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(<u>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</u>) 3. ~ 10. (현행과 같음) ② ~ ⑩ (현행과 같음)
	<신설>	<u>부칙</u> <u>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23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.</u>